

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4. 05. .
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제정이유

이천시 도자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가.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안 제3조)
- 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함 (안 제5조)

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도자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

1. 산·학·연·관 협동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
2. 도자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관련기관 유치 및 설치
3. 도자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4. 기타 도자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사항

제3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위원은 도의회 의원, 시의회 의원, 대학교수, 관련 연구기관, 관계전문가, 도자관련업체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제4조 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본인의 사망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
제5조 (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회의)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7조 (수당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.과.소		지 역 경 제 과
입 안 자	실.과.소장	지역경제과장
	직위.성명	박 치 완
	담당.팀장	도예담당
	직위.성명	윤 광 석
	담당자	이 주 열
	성명.전화	(644-2281)